

감 사 원

심 사 결 정

분 류 번 호 2016-심사-820

제 목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교통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
대표이사 A
대리인 ■■노무법인 공인노무사 B

처 분 청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교통주식회사(이하 “청구인 회사”라고 한다)소속의 버스운전기사 망(亡) C(이하 “재해자”라 한다)는 2013. 1. 22. 06:50경 ****번 시내버스(서울**사****)를 운행하던 중 경기도 안양시 ■구 삼거리 앞 도로상에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재해자는 사고 당일 날 사직을 하고 2013. 2. 28.부터 안양 ■■■병원 등에서 <<과적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4. 4. 16. 09:00경 경기도 ■시 소재 ■■■

오피스텔 14층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다. 이에 재해자의 유족은 2015. 10. 13. 처분청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재해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2016. 4. 20.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2016. 5. 2.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재해자의 <<과 치료 원인이 이 사건 사고였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재해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재해자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1992. 8. 11. 자동차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종사하다가 2013. 1. 22. 이 사건 사고 당일 퇴직하였다.

(2) 안양경찰서가 2015. 10. 13. 작성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따르면 재해자는 2013. 1. 22. 06:50경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경기도 안양시 구 삼거리 앞 도로상에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였다.

(3) 재해자가 내원한 병원 의무기록 명세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의무기록 명세

구 분	내 용	일 자
안양 병원	교통사고 이후 불안, 초조, 불면 등으로 내원하여 진료 후 귀가	2013. 2. 28.
	1개월 전 사고 후 잠 못잠. 불안함.	2013. 3. 2.
과 의원	수면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 진균증에서의 바깥귀길염, 경도의 우울성에 피소드로 약물치료	2013. 3. 8.
△△병원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로 응급실 접수 후 진료거부, 접수취소 후 귀가	2014. 4. 16.

(4) 재해자 관련 의학적 소견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의학적 소견

구 분	내 용	일 자
주치의사 소견 (대학교병원)	상기 환자는 2013. 3. 16.부터 같은 해. 4. 15.까지 본원 의학과에서 교통 사고 이후 발생한 불안, 불면, 우울감, 죄책감 등으로 상기 진단명(외상후 스트레스 장애)하에 과적인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시행하였던 환자임	2014. 7. 29.
처분청 자문의사 소견	환자의 2013. 2. 28.부터 2014. 3. 31.까지의 의학과 치료는 교통 사고 이후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해 시행된 것으로 사료되고, 환자분의 2014. 4. 16. 자살 시도는 환자분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후 공존된 우울증의 증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2015. 11. 9.

(5)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2016. 4. 20. 작성한 업무상질병판정서(2015판정 제2***호)에는 “적극적 치료가 미흡한 상태에서 중증의 우울증 상태로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자살까지 이른 것으로 보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2015. 9. 18. 선고한 판결문(2014*단10**** 본소 채무부존재확인)에는 “피재근로자가 자살사건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감행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기재 되어 있다.¹⁾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아니 하되,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던 중 정신적 이상

1) 이 건과 관련 패소한 원고가 다시 수원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으로 최종 확정(2016. 7. 26.) 되었음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나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에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및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과 치료 원인이 이 사건 사고였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위 인정사실 “(1)항” 및 “(2)항”과 같이 재해자는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하다 2013. 1. 22. 발생한 사망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사고 당일 퇴사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② 위 인정사실 “(3)항” 및 “(4)항”과 같이 재해자가 퇴직한 후 2013. 2. 28.부터 자살 직전인 2014. 4. 16.까지 의료기관에 계속적으로 내원하여 교통사고 이후 발생한 불안, 불면, 우울감, 죄책감 등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성 에피소드’ 등의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있다는 점, ③ 위 인정사실 “(4)항”과 같이 〰〰대학교 〰〰병원 주치의사 진단과 처분청 자문의사의 소견서에는 2013. 1. 22.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이 공존된 우울증과 관련하여 재해자가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점, ④ 위 인정사실 “(5)항” 및 “(6)항”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질병판정서’와 ‘수원지방법 원안양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재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중증의 우울증 상태로 진행하여 자살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고 재해자의 자살을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행한 자해행위임을 의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 11 . 09 .

[별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생략)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